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운영 기준 개정(안)

제정 2019.12.05. 개정 2020.08.21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학칙」제52조 학사학위취득유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학사학위취득유예는 학칙 제50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학기의 졸업 시기에 졸업을 하지 않고 허가받은 학기 동안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.
- **제3조(적용대상)**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으로서 계속 수학하기를 원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- 제4조(유예기간) 학사학위취득유예는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며,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된다. 단, 재학연한 마지막 학기에는 졸업처리 된다.
- 제5조(신청자격)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격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.
 - 1.「학칙」제37조3항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하고,「학칙」제36조2항에서 정한 재학 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
 - 2.「학칙」제50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사람
- 제6조(신청시기 및 절차) ① 1회차(최초) 신청은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학기에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.
- ② 2회차 신청부터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최초 학기를 이수하는 자가 신청기간 내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7조(수강신청) ①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는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. 다만, 재수강(대체지정과목 포함)신청은 "F"학점 취득 교과목으로 제한한다.
 - ②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가 수강신청을 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강신청 내역을 삭제한다.
- ③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는 수강정정이 불가하며 수강 포기 기간 내에 수강 포기를 할 경우,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.

- (단, 학교의 사정으로 등록한 과목이 폐강이 된 경우는 전액 환불한다.)
- 제8조(등록) ①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승인받은 자가 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 - 1. 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 - 2. 4~6학점까지는 등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 - 3. 7~9학점까지는 등록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 - 4. 10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
 - ②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가 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.
- 제9조(졸업사정 및 학위수여) ① 학사학위취득유예중 취득한 학점은 성적 및 졸업사정 에 반영한다.
 -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추가로 유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, 유예기간이 속한 학기의 학위수여일에 학위를 수여한다.
- 제10조(기타사항) ①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없다.
 -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허가받고 학기가 개시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. 다만, 사망, 부상, 질병,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속한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한다.
 - ③ 휴학 중인 자가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 신청을 한 경우, 복학 승인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또는 졸업을 할 수 있다.(신설 2020.08.21.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9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5조 신청자격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며 2019학년도 2학기 이전에 제5조 신청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4학기까지 신청자격을 적용한다.

<u>부</u>___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0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개정 이전에 시행된 제10조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된 기준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.